

KOLAS 공인검사기관 인정 공고

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(시험·검사기관 인정 등),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(공인기관의 인정 등) 및 「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」 제10조(인정 및 공고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OLAS 공인검사기관을 인정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27일

한 국 인 정 기 구 장

1. 공고대상기관

인정 번호	기관명	법인등록 번호 (또는 고유번호)	사업장소재지	유효기간	인정분야 및 범위	구분
KI109	한 국 항 로 표지기술원 시험검사소	164771- 0007767	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436-29	‘24년 7월 16일 ~ ’28년 7월 15일	인정서 참조	재평가

2. 공고방법 : KOLAS 홈페이지(www.knab.go.kr)

부칙 :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. 끝.